

「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더불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·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, 배수설비 대행업자 범위를 신설하여 부실 시공 방지 및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도모.
- 분뇨 수집·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, 분뇨 수집·운반업자 폐업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구미시에서 위탁·운영하는 분뇨 수집·운반업자의 경영안정 및 공공서비스의 질적향상 도모.

3. 주요내용

- 배수설비 사용개시 등 신고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3조)
- 배수설비 대행업자 범위 신설(안 제13조제6항)
 - 「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근거
-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·부과기준 세부내용 추가 및 신설
 -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명확화(안 제21조, 제24조)
 -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법정공고 방법 개선(안 제21조)
 -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·징수시기 명확화(안 제23조)
 - 원인자부담금 사용범위 신설(안 제24조의2)
- 분뇨 수집·운반 관련 용어 정비(안 제25조 ~ 제30조)
- 분뇨 수집·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조항 신설(안 제26조의2)
- 분뇨 수집·운반 수수료 인상(1m³당 19,800원) 및 사용료 감면(별표 6)
 - 기존 기본요금+초과요금 체계 ⇒ 기본요금 제도로 요금체계 변경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하수도법」
- 「물환경보전법」
- 「지방자치법」
- 「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」

○ 합 의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, 업무과, 환경관리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배수설비 준공 신고사항, 하수도 원인자부담금¹⁾ 산정·부과 기준 명시 등 상위법의 지자체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,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범위 지정, 분뇨 수집·운반 수수료 인상 및 운반업자의 폐업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안 제13조제6항은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의 범위를 관내업체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(「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」 제8조제1항²⁾ 신설),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 다만, 계도기간 운영 및 충분한 사전 홍보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서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1) 원인자부담금: 건축물을 신축,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 배출량이 증가하거나 새로 배출되어 공공하수도로 유출할 경우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금액

2) 제8조(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)

- ① 조례 제13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는 「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(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)에 따른 자로 한다.

- 다만, 「하수도법」 제19조의2³⁾의 개정(2012. 2. 1.)으로 공공하수도 운영·관리 업무를 일정한 시설·인력을 갖춘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관리대행업 등록제를 조례로 규정하여 관내업체 등으로 제한이 가능하였음. 집행부는 향후 적극적 법령 해석으로 조례 제·개정 등 선제적인 조치를 실시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임.
- 안 제26조의2는 분뇨수집·운반업자에 대한 폐업 희망업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, 폐업지원금 산정 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3) 제19조의2(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)

- ① 공공하수도관리청(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“관리대행업자”라 한다)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·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·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